

실습지원비 산출 방법

※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
2023년 최저시급 9,620원

(예시1) 1일 8시간, 주 5일, **교육시간 25%**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 지원비

■ 주 단위 실습시간 수

(일 실습시간 수 × 주 실습일수 +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) 값 ⇒ (8 × 5 + 8) = 48시간

■ 주 단위 실습지원비

(주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 ⇒ 48시간 × 0.75 × 9,620원 = 346,320원/주

■ 월 단위 실습시간 수

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 × (365 ÷ 12)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
⇒ [(8 × 5 + 8) ÷ 7] × (365 ÷ 12) = 208.57 ≈ 209시간

■ 월 단위 실습지원비

(월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 ⇒ **209시간 × 0.75 × 9,620원 = 1,507,935원/월 이상**

(예시2) 1일 8시간, 주 5일, **교육시간 10%**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 지원비

■ 월 단위 실습지원비

(월 단위 실습시간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×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) ⇒ **209시간 × 0.9 × 9,620원 = 1,809,522원/월 이상**

※ 실습지원비 100% 지급 : 1개월 최저임금 2,010,580원 이상(2023년 기준)

실습지원비 환급 신청

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, 학생에게 실습지원비 100% 지급한 실습기관 대상
- 현장실습학기제 완료 후 실습기관이 지급을 요청한 경우, 월 최저임금의 25% 환급
- 1개월 현장실습학기제를 진행한 경우, 월 최저임금 2,010,580원 이상(2023년 기준) 실습지원비를 지급한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25% 지급

학과 안내

계열	학과명	학과사무실
공학계열	소프트웨어융합과	02-2290-2200
	스마트IT과	02-2290-2380
	빅데이터과	02-2290-2620
자연과학계열	식품영양과	02-2290-2180
	보건행정과	02-2290-2610
	치위생과	02-2290-2570
	외식산업과	02-2290-2590
인문사회계열	유아교육과	02-2290-2450
	비서인재과	02-2290-2360
	사회복지과	02-2290-2650
	아동보육과	02-2290-2600
	호텔관광과	02-2290-2260
	실무중국어과	02-2290-2250
	항공과	02-2290-2480
	실무영어과	02-2290-2280
	행정실무과	02-2290-2690
	서비스경영과	02-2290-2300
	실무일본어과	02-2290-2440
	세무회계과	02-2290-2310
	예체능계열	세라믹디자인과
문예창작과		02-2290-2340
니트패션디자인과		02-2290-2220
섬유패션디자인과		02-2290-2420
산업디자인과		02-2290-2320
스포츠건강관리과		02-2290-2430
인테리어디자인과		02-2290-2400
시각미디어디자인과		02-2290-2460
패션디자인과		02-2290-2140
영상콘텐츠과		02-2290-2580
실용음악과	02-2290-2560	

현장실습지원센터

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200 한양여자대학교 도서관 3층
연락처 : 02-2290-2665, 2058

한양여자대학교 <https://www.hywoman.ac.kr>

현장실습지원시스템 <https://prac.hywoman.ac.kr>

한양여자대학교 표준 현장실습학기제



한양여자대학교
현장실습지원센터

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?

-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,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대학과 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 방법이다.
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방학기간 또는 학기 중에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,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을 총 실습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로 운영한다.

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+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(10~25%) = 100%

구분	기준
실습기관 근무제 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주 5일 기준 - 주당 근무제 형태가 1주 4일, 6일인 경우 운영 가능(최소 총 20일 이상 운영)
실습기관 전일제 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일 8시간(휴게시간 제외) 기준 - 전일제 형태가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운영 가능
정규 실습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주 40시간 기준 - 1주 40시간 기준 내에서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운영 가능
실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위 기준에 따른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을 편성, 운영 - 최소기준 :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 - 권장기준 :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개월 단위의 기간 편성, 운영
실습지원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무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의무 지급 원칙 - 최저 임금의 75/100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
보험 가입	산재보험(실습기관) 및 상해보험(학교) 가입 의무

실습기관 요건 및 권리

- 교육부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」 제8조제3항, 제4항

제8조(실습기관)

- ③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1.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
 2.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
 3.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·설비·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
 4.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 교육, 지도가 가능할 것
 5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·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
 6.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고, 각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
- ④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는다.
1.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
 2.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관한 학생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권리
 3. 학생 또는 학교로 인하여 운영 기준 및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등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운영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절차



[현장실습학기제 일정]

구분	내용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
하계	산업체 모집						
	학생지원 및 선발						
	현장실습학기제 운영						
구분	내용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
동계	산업체 모집						
	학생지원 및 선발						
	현장실습학기제 운영						

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

- ①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신청 및 협의(관련 학과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)
- ② 현장실습지원시스템에 참여 등록
 - 산업체 관련 정보 및 현장실습 관련 내용 입력
 - 사업자등록증, 사진 서면점검서, 운영계획서 입력 및 업로드
- ③ 운영계획서 협의 및 확정
- ④ 학생지원 및 선발

현장실습학기제 참여 대상

정규학기를 기준으로 3년제는 2학기 이상, 2년제는 1학기 이상을 이수한 해당학기 등록 재학생

실습지원비

-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
- 월 최저 임금의 75/100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
-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
-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버스 등)은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지급불가

